

특 정 감 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4년 집중호우대비 공사현장 특정감사 —

2024. 8.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치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회수	금액	감액	금액	추징	금액
계				3건	3	0	0	0	0	0	0	0
1	※	※	※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1							
2	●	●	●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1							
3	◇	◇	◇	□□□□□□□□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1							

2. 처분요구일람표

1.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1
2.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6
3. □□□□□□□□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11

일련번호	1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처리부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 @ @

관 계 부 서 ※ ※ ※

내 용

@ @ @ ※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기간	사 업 비			도급자	비고
			계	도급액	관급액		
△△△ 정비공사	교량 2개소, 호안정비 L=1.1km 등	2023. 5.10. ~ 2025. 7. 5.	4,961	3,172	1,789	(주)♣♣♣♣건설 000	15%
▲▲▲ 정비공사	PC 박스 5개소, 호안정비 L=0.67km 등	2023.10.17. ~ 2024.12.15.	1,123	603	520	㉹㉹건설(주) 000	65%

1. 시공확인 및 현장관리 공사감독업무 소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제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

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4조, 제138조 제1항, 제14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독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설계도면·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 정비공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부적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장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감독자는 공사시행 단계에서 시공확인 품질관리계획 관리, 공정 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자재관리에 대한 업무가 성실하게 수행되는지를 확인 또는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 운반,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 ※※※에서는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현장 시공확인, 안전관리, 환경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미비하거나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적절한 지시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 정비공사” 현지 확인 결과 아래 [사진 1]과 같이 공사용 가도 및 가배수로 구간 유수 지장물과 토석이 쌓여 있어 강우 시 통수에 지장이 있는 상태로 사업 추진 중이다.

또한 건설 폐기물(폐콘크리트) 임시야적장 표지를 적절하게 설치하지 않아 임시 야적장 확인이 어렵고 폐기물의 덮개를 미설치하고 보관하고 있어 비산우려가 있는 등 현장 건설 폐기물 임시보관이 미흡하게 관리되고 있다.

[사진 1] △△△ 정비공사 현장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부적정 현황

유수지장물 및 하상정비 불량	조치 후
폐기물 보관 부적정	조치 후

나. ▲▲▲ 정비공사 현장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부적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장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감독자는 공사시행 단계에서 시공확인 품질관리계획 관리, 공정 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자재관리에 대한 업무가 성실하게 수행되는지를 확인 또는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 ※※※에서는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현장 시공확인, 안전관리, 환경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미비하거나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적절한 지시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 정비공사” 현지 확인 결과 아래 [사진 2]와 같이 통수량 검토 없이 가도 및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풍수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공사용 자재를 하천 내에 적재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등 우기철 갑

작스런 집중호우 대비에 취약하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구조물 터파기 구간 되메우기 지연 및 강우시 세굴방지 대책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터파기 사면 일부 세굴이 발생하고 도로노면 유실이 발생하는 등 현상이 미흡하게 관리 되고 있다.

[사진 2] ▲▲▲ 정비공사 현장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부적정 현황

임의 설치 공사용 가도	철거 후
하천구간 자재 적재	조치 후
세굴방지 미조치 및 하천내 자재 적재	되메우기 및 자재 이동 조치

2. 시공 부적정에 대한 공사비 감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 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계상된 공종 및 미이행 공정은 설계 변경을 통하여 감액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도면·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 정비공사” 구간 1번 PC BOX(No.14+10.5~No.15+4.0)의 설계 반영된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고 설치하였으나 보완이나 재시공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공사비 0,000천 원(제경비 포함)감액 없이 공사 시행 중이다.

조치할 사항 @@@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현장 안전 및 환경관리 미흡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시고, 미시공된 버림콘크리트 사업비 0,000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2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처리부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 @ @

관 계 부 서 ●●●●

내 용

@ @ @ ●●●●에서는 지방하천인 §§ 수위 상승시 내수배제 불량으로 빈번하게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저지대 주거지 및 농경지 등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고자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아래[표 1]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표 1] 공사 및 용역 현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용역명)	위 치	사 업 량	공사(용역)금액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계	도급액	관급액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면 ○○리	·하천정비 1.6km ·교량시설 1개소 ·펌프장 및 유수지 2개소	32,582	18,847	13,735	2022.08.10. ~ 2026.09.22.	●●●건설(주) (주)●●●●●●●●	14.7%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기본및 실시설계용역	@@@ △△면 ○○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2,060	2,060	-	2020.7.15. ~ 2022.9.30.	(주)◆◆ 외 5	100%

1. 안전작업 확인 소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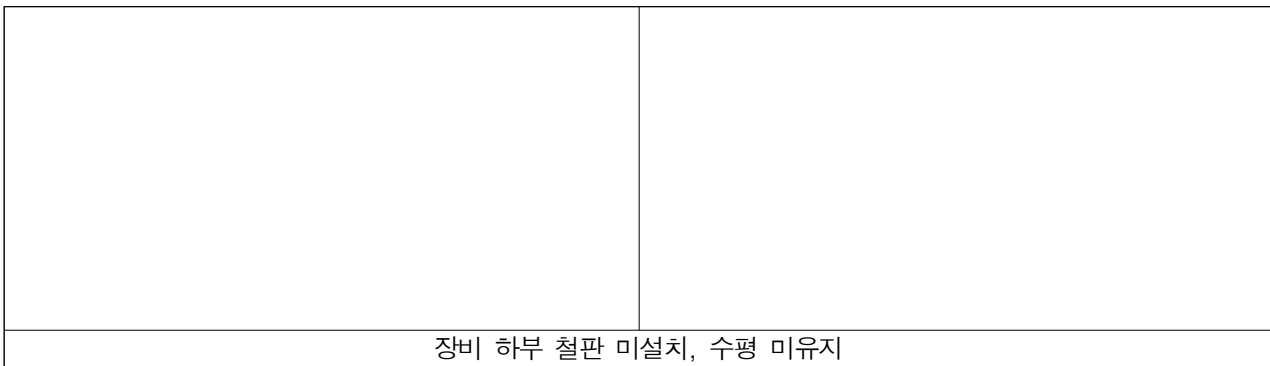
「이동식 크레인 안전보건작업 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2.12.)」 및 「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의 안정성 검토 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5. 11.)」에 따르면 작업장소의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최대 작용하중에 대응할 수 있

는 지지력이 확보되었는지 검토하고, 지지력이 부족하거나 미끄럼 방지가 필요한 경우 철판받침이나 매트 등의 위에 설치하거나 지반 보강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동식 크레인의 수평 균형을 확인하여 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 ●●●에서는 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 시 넘어짐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위해 작업장소의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지반을 보강하거나 받침철판 등을 설치하여 수평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및 조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기산 배수펌프장 굴착공사를 실시하면서 아래[사진]과 같이 이동식 크레인의 수평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철판받침을 사용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시정하지 않아 건설장비 넘어짐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사진] 이동식 크레인 거치 상태



장비 하부 철판 미설치, 수평 미유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8제1항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²⁾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의 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대통령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10미터 이상 굴착공사, 높이10미터이상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공사(본 공사는 천공기, 항타·항발기 사용)
 2)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및 브라켓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등(본 공사는 높이 2미터 이상 흙막이 지보공, 높이 5m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해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에 따르면 발주자는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건설안전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 지정 방법 및 절차를 이행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 ●●●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건설사업자로부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상기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업체를 선정³⁾하였다.

[표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절차 업무 수행 현황

지정절차		지정절차 업무 수행 현황		지적사항	비 고
세부내용	행위흐름	일 자	업무 수행 현황		
1. 시공자(감리자)가 정기안전점검 등 실시를 위해 발주자에게 지정요청	시공자(감리자) → 발주자	‘23.04.07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제출	-	
2. 발주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작성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모집	발주자	-	-	절차 누락	
3. 모집공고에 응하려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발주자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제출	안전점검 수행기관 → 발주자	-	-	절차 누락	
4.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작성·관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발주자	-	-	절차 누락	
5.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비용을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청서를 발주자에 제출	시공자 → 발주자	-	-	절차 누락	
6. 발주자는 5번항 이후 7일 이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정공고 ⁴⁾	발주자	-	-	절차 누락	
7.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6번항의 지정공고한 수행기관 지정 방법에 따라 서류 등을 제출	안전점검 수행기관 → 발주자	-	-	절차 누락	
8. 발주자는 7번항의 서류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후 통보	발주자 → 안전점검 수행기관	‘23.04.1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세 부 평 가 기 준 에 따라 평가하는 절차 누락	

※ @@@ 제출자료 참고 작성

3) ㈜■■■■엔지니어링

4) 접수기간·수행기관 지정방법·사업내역·제출서류,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발주자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대상 및 안전점검비용, 시공자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착공예정일, 발주자가 관리하고 있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중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그 결과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있어 업체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안전 점검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미실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⁵⁾에 대하여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참여기술인의 적정성, 과업 이행 결과의 적정성 및 과업 이행내용의 충실성 등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이하 “용역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고 용역평가 결과를 평가 총괄표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용역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⁶⁾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 ●●●에서는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착공일인 2022. 8. 10. 후 6개월 이내인 2023. 2. 5.까지 설계용역평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용역평가를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 ●●●에서는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용역금액이 0,000백만 원으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인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용역평가를 하지 않고 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설계업무를 수행한 용역업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설 관련 기술과 경험을 평가하여 건설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하고자 하는 관련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 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물품 및 용역 2억 2천만 원)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

6) 설계용역평가 위원별 평가표, 설계용역평가 결과표를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기관에 제출

조치할 사항 @@@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건설장비 작업시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완료된 설계용역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용역평가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3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처리부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 @ @
관 계 부 서 ◇◇◇◇
내 용

@ @ @ ◇◇◇에서는 ♡♡면 ●●리 산31-22번지 □□□□□□□□ 조성공사를 아래 [표]와 같이 담당하면서 2019. 5월부터 2024. 6월 감사일 현재까지 필수적인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의뢰, 처리하였고 추락에 따른 안전조치, 설계용역 평가 및 설계공모 저작권 등 공공건축물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표]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발주부서 (사업기간)	건축 협의	착공 (완료일)	설계 금액	공사 금액	도급자 (감리자)	비고
1	□□□□□□□□ 조성공사	문화및잔화시설 3,483㎡	◇◇◇◇ (19.5.~진행 중)	22.6.8.	22.2.16 (22.8.3)	2,030	17,826	유유유유건설주 (☒☒☒☒☒☒)	건축협의 120일 자연 착공신고 158일지연

1. 건축협의 및 착공신고 등 사전절차 이행 부적정

「건축법」 제11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

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건축법」 제21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에 건축 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기술지도 계약서 사본, 감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공사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에서는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사시행 전에 건축허가 서류를 구비하여 허가권자와 협의를 한 후 계약을 의뢰하고, 착공신고서에 건축 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기술지도 계약서 사본, 감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공사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 ◇◇◇에서는 □□□□□□□□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건축협의(허가) 없이 2022. 2. 8.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 16. 공사를 선착공 후 158일 동안 착공신고 수리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같은 해 8. 3. 에 서야 착공 신고수리를 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령 취지와 달리 건축협의 및 착공신고 수리 지연 등으로 안전관련 설계도면 검토 등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추락에 대한 안전조치 및 이동식비계 설치 부적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4조 및 제4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 등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68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썰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37조 및 제138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주요 구조물의 시공 중 붕괴사고, 부설시공 등의 발생 원인이 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 가시설의 구조 및 시공 부주의에 기인하는 점을 명심하여 공사 시공 전에 시공자로 하여금 가시설에 대한 설계, 구조, 시공의 검토를 하도록 하고, 시공과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 공사와 영구 시설물 공사의 작업 단계별 시공 상태를 확인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에서는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을 진행하면서 작업 중 낙하물 및 추락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고, 기 시공된 안전난간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 탈락 또는 훼손된 경우 즉시 재설치 하도록 하며, 이동식 비계에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 ◇◇◇에서는 이번 감사기간(2024. 6. 17.~21.) 중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아래 [그림 1]과 같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필요한 안전난간 미설치, 절토 경사지 관리 미흡, 건축자재 및 주변

정비 부적정 등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으며,

또한 천장 및 마감공사를 위해 사용 중인 이동식비계의 경우 아래 [그림 2]와 같이 바닥면이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비계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비계바퀴에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여 비계가 전도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령 취지와 달리 작업 중 낙하물에 의한 안전사고와 이동식비계 작업 중 추락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림1] □□□□□□□□ 조성공사 안전관련 부적정 현황

안전난간 미설치	공사현장 주변정비 부적정
건축자재 보관 부적정	절토 경사지 관리 부적정
배관설비 설치 부적정	안전난간 설치 부적정

[그림 2] 이동식 비계 설치 부적정 현황

이동식 비계설치 메뉴얼	현장사진

3. 설계용역평가 미 실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계약금액 220백만 원 이상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는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참여기술인의 적정성, 과업 이행 결과의 적정성 및 과업 이행내용의 충실성 등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발주청은 설계용역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가 자료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작성·제출토록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발주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평가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 ◇◇◇에서는 □□□□□□□□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착공 일인 2022. 2. 16. 후 6개월 이내인 2022. 8. 16.까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설계용역평가를 하여 과업 이행 결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 ◇◇◇에서는 □□□□□□□□ 조성공사 설계용역의 용역 금액이 2,030백만 원으로 220백만 원이 넘어 건설기술용역 평가대상인데도 감사 일 현재까지 「건설기술 진흥법」에 규정된 용역평가를 하지 않고 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설계업무를 수행한 용역업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 설계공모 관련 저작권 귀속 부적정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6조 및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르면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고,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창작물의 저작자는 저작권(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은 출품자(창작자)에게 있으며, 공모전을 주최하는 기관은 입상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⁷⁾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할 수 없고, 입상작에 대해 저작재산권 전체나 일부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입상작을 발표한 후 거래 관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 해당 응모자와 별도 합의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인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응모자에 대해 상금 등을 지급하는 조항은 설계 공모전에 대해 참여를 유도하려는 ‘포상금’ 또는 ‘격려금’의 성격이므로 권리 양수의 대가를 미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발주 기관이 설계자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전부 양도받는 조항은 부당하고 불리한 조항이기에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건축설계 공모를 진행하면서 설계공모 지침서 상 제출 작품에 대하여 별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설계자의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귀속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 활용 등에 관하여는 저작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도 @@@ ◇◇◇에서는 □□□□□□□□ 조성공사 건축설계 공모를 진행하면서 설계공모 지침서상에 당선작의 저작권 및 사용권 등 법적 소유권은

7)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저작권법」 제14조에 따르면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 전속적인 권리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공모전의 주최 기관이 응모작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에 한정됨

@@@에 귀속된다고 규정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응모자와의 별도 협의 없이 설계자의 저작권 등을 @@@에 귀속하는 것으로 설계공모지침서에 공고하여 공모전을 진행함으로써 향후 저작권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진행 중인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시설은 규정에 맞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